

2015년 충청북도 재정공시(예산)

충청북도 재정공시 제2호(2015. 2. 28.)

충청북도지사(인)



- ◆ 우리 도의 '15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38,88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874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액 72,335억원 보다 33,446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195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3,460억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6,233억원입니다.
- ◆ 우리 도의 '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3.69%이며(9개 道 평균 30.29%),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0.39%(9개 道 평균 42.30%)입니다.
- ◆ 우리 도의 '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0억원의 적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 우리도의 재정은 동종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주요 재정지표값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타자치단체보다 중앙의존도가 높고,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적게 교부받았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앞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자주재원 확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예산담당관실 오선영(043-220-2213)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충청북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예산규모	세입예산	38,889	37,015	1,874	72,355	66,526	5,808
	세출예산	38,889	37,015	1,874	72,355	66,526	5,808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3.69	21.52	2.17	30.29	29.05	1.24
	재정자주도	40.39	40.67	△0.28	32.30	42.67	△0.37
	통합재정수지	△20	△226	205	89	△98	187
③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동종단체 : 도, 특별자치도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888,910	3,215,709	271,557	271,535	130,109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134,876	3,308,567	3,490,251	3,701,504	3,888,910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595,229	100.0	2,678,639	100.0	2,858,260	100.0	3,063,987	100.0	3,215,709	100.0
지방세	629,100	24.24	653,600	24.40	688,700	24.10	696,231	22.72	798,200	24.82
세외수입	85,139	3.28	174,755	6.52	187,665	6.57	66,073	2.16	68,469	2.13
지방교부세	456,248	17.58	503,573	18.80	542,400	18.98	561,603	18.33	514,000	15.98
보조금	1,354,742	52.20	1,323,710	49.42	1,419,495	49.66	1,530,086	49.94	1,669,081	51.90
지방채	70,000	2.70	23,000	0.86	20,000	0.70	-	0.00	-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209,994	6.85	165,959	5.1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충청북도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888,910	3,215,709	271,557	271,535	130,109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134,876	3,308,567	3,490,251	3,701,504	3,888,910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분야별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595,229	100.0	2,678,639	100.0	2,858,260	100.0	3,063,987	100.0	3,215,709	100.0		
일반공공행정	245,520	9.46	254,553	9.50	272,064	9.52	285,361	9.31	324,987	10.11		
공공질서 및 안전	173,502	6.69	181,631	6.78	205,739	7.20	182,732	5.96	197,000	6.13		
교육	150,959	5.82	156,681	5.85	170,653	5.97	164,449	5.37	173,877	5.41		
문화 및 관광	90,874	3.50	104,541	3.90	99,233	3.47	116,878	3.81	121,250	3.77		
환경보호	254,503	9.81	169,527	6.33	207,902	7.27	274,457	8.96	240,933	7.49		
사회복지	642,813	24.77	710,938	26.54	783,071	27.40	964,354	31.47	1,029,145	32.00		
보건	44,894	1.73	52,977	1.98	74,675	2.61	54,921	1.79	59,270	1.84		
농림해양수산	341,741	13.17	348,849	13.02	376,848	13.18	391,758	12.79	427,886	13.31		
산업·중소기업	86,206	3.32	93,604	3.49	94,390	3.30	104,807	3.42	85,876	2.67		
수송 및 교통	220,007	8.48	228,445	8.53	211,073	7.38	175,907	5.74	159,777	4.97		
국토 및 지역개발	118,466	4.56	135,218	5.05	101,104	3.54	78,273	2.55	109,370	3.40		
예비비	34,680	1.34	35,720	1.33	39,826	1.39	36,835	1.20	38,366	1.19		
기 타	191,065	7.36	205,954	7.69	221,682	7.76	233,255	7.61	247,974	7.71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4,062,062	4,220,704	4,348,879	4,476,765	4,598,634	21,707,044	3.20
자 체 수 입	953,365	971,028	992,776	1,012,245	1,031,296	4,960,710	2.00
의 존 수 입	2,409,160	2,530,353	2,608,345	2,698,680	2,782,185	13,028,723	3.70
지 방 채	143,000	148,000	148,000	153,000	153,000	745,000	1.7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56,538	571,323	599,758	612,840	632,153	2,972,612	3.20
② 세 출	4,062,062	4,220,704	4,348,879	4,476,765	4,598,634	21,707,044	3.20
경 상 지 출	566,541	576,896	604,367	617,334	662,453	3,027,591	4.00
사 업 수 요	3,495,521	3,643,808	3,744,511	3,859,432	3,936,181	18,679,453	3.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3.6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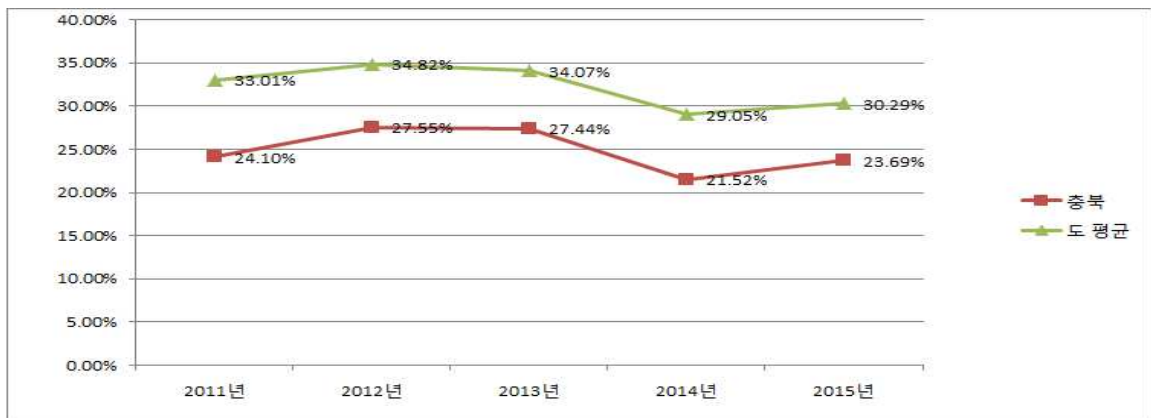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등 내부거래 (E)
23.69	3,078,409	729,369	2,183,081	-	165,959

-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24.10	27.55	27.44	21.52	23.69
최종예산	25.41	28.58	28.81	23.12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동종 자치단체(9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 30.29%보다 6.6%나 낮은 23.69%로 비교적 국가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 2013년도와 비교하여 2014년도 재정자립도 급격하게 하락한 사유는 세입과목 변경으로 세외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 잉여금, 전입금, 융자금, 예수금 과목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으로 변경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충청북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0.3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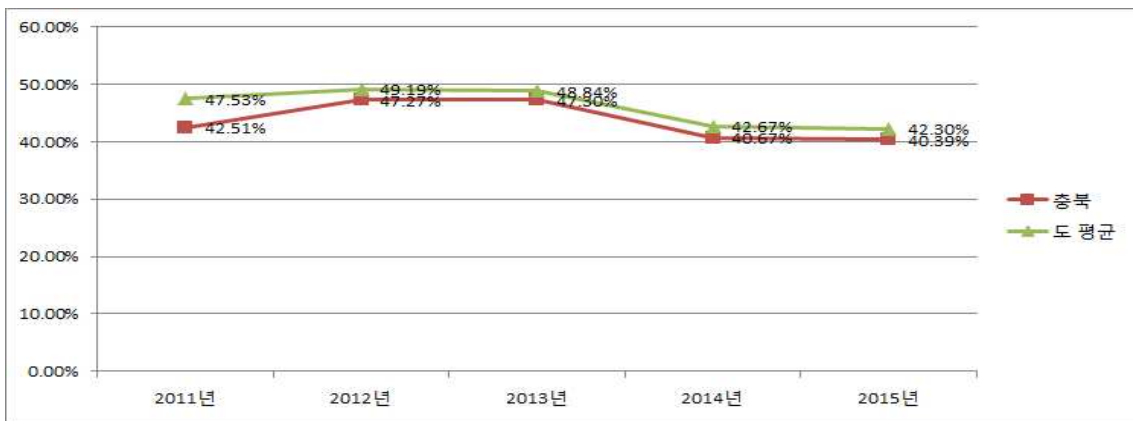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0.39	3,078,409	1,243,369	1,669,081	-	165,959

-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42.51	47.27	47.30	40.67	40.39
최종예산	44.50	49.16	48.24	41.68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 동종 자치단체(9개도)의 평균 재정자주도 42.30%보다 1.91% 낮은 40.39%로 비교적 재정자립 능력이 조금 낮은 실정입니다.
- ◆ 2013년도와 비교하여 2014년도 재정자주도가 급격하게 하락한 사유는 재정자립도와 마찬가지로 세입과목 변경으로 세외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 잉여금, 전입금, 용자금, 예수금 과목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으로 변경

3-3. 통합재정수지

- 모든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에서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를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충청북도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298,330	3,433,445	53,698	95,131	41,433	174,519	3,474,878	△176,548	△2,028
일반회계	3,085,459	3,071,419	4,000	450	△3,550	70,000	3,067,869	17,589	87,589
기타 특별회계	183,520	254,493	7,491	16,881	9,389	21,254	263,883	△80,362	△59,108
공기업 특별회계	20,792	99,069	17,011	30,000	12,988	83,265	112,057	△91,264	△7,999
기금	8,557	8,462	25,194	47,800	22,605	-	31,067	△22,510	△22,510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86,735	△127,917	△111,013	△72,555	△176,548
통합재정수지 2	△27,859	△25,643	△25,248	△22,567	△2,028

- ◆ 우리 도의 20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 잉여금 포함)는 20억원의 적자로 전년도 226억원 적자보다 개선되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충청북도의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4	54,481
여성정책추진사업	13	18,74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4	27,64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7	8,092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 보세요(<http://www.cb21.net/>)

>> 정부3.0정보공개 >> 도 살림살이 >> 재정예산공시 >> 2015년 재정공시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사업 우선순위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모델 2안과 3안을 혼용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758,800	134,684	2~3안 준용

▶ 20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위원회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지원 기타 부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도 재정운용의 중점 추진사항 및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수렴(재정투자사업에 한함)
 - ※ 국고보조사업 및 경상적 경비,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제외
- 실국에서 제시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 기타 예산편성과 관련한 건의사항 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 보세요(<http://www.cb21.net/>)

>> 정부3.0정보공개 >> 도 살림살이 >> 재정예산공시 >> 2015년 재정공시

❖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요구		반영		반영비율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계	327	185,136	239	134,684	73.1
일반행정분과	21	4,572	15	3,455	71.4
복지여성분과	45	7,139	34	6,004	75.6
경제환경분과	31	36,771	28	43,568	90.3
농정분과	60	11,508	32	6,677	53.3
문화체육분과	113	38,419	89	24,176	78.8
건설소방분과	57	86,727	41	50,804	71.9

☞ 상세내역 별도 첨부